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을 소방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과 조직 내 필요한 직무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개편하는 한편, 채용시험에서 소방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어학 등의 가점을 정비하고 가점비율을 축소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 근거규정 보완(안 제14조)

- 1)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특성을 반영하여 근거 규정 보완 필요
- 2)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보완

나. 채용시험의 단계별 구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안 제17조의2, 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3조, 안 제46조)

- 1)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은 시험방법과 합격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전형 및 종합적성검사는 시험방

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류전형과 종합적성검사의 시험단계 재구성 등 필요

- 2) 서류전형의 합격결정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것으로 하며, 종합적성검사는 면접시험과 병행하고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 신체검사를 채용시험 단계에서 제외하고 채용후보자등재 시 신체검사를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

다.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 개편 (안 제36조, 안 제38조, 안 제44조, 안 제46조, 별표 4, 별표 4의2)

- 1) 공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직 역량”을 검증할 수 있고,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실용성”을 갖춘 시험체제로 개편
- 2) 공직적격성평가 (PSAT)를 도입하고 계열 공통 필수과목에 ‘소방학개론’, ‘행정법’ 신설하며, 선택과목을 폐지

라. 과목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표 정비 (별표 6)

- 1) 현행 토플(TOEFL) 형식에 따른 기준점수 정비 필요
- 2) 토플(TOEFL) 기준 점수 중 PBT 관련 점수 삭제

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개선 (안 제42조, 안 제42조의2)

- 1)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어학 등 가점을 정비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가점만 적용하도록 개선함
- 2) 필수 소방인력인 운전요원 확보 및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1종 대형운전면허’ 외 모든 가점 대상 자격증은 폐지하고, 가점 반영

비율 축소,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등 지원 기준 규정

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하한 응시연령 기준 통일 (안 제43조, 별표 2)

1) 연령하한은 소방업무특성을 고려해야하는 신체능력과 무관하며,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 확보 및 공직진출 기회 확대 방안으로 개선 추진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하한 응시연령을 18세로 통일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 사유 정비 (안 제43조의2)

1) 응시결격사유는 공직 진입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 제한 사항으로, 입법 형식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비, 응시결격사유 기준일 근거 등 마련 필요

2) 응시결격사유에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규정

아. 응시수수료 관련 면제 대상 정비 (안 제49조)

1) 저출산 시대를 고려한 다자녀 부모 우대 방안

2)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응시 수수료 면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하는 소방공무원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하는 소방공무원
3.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하는 소방공무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신체검사) ① 소방공무원을 채용(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②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을 “자격증소지자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자격 등”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직적격성평가

공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응시하는 사람은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을 “제36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응시하는 사람은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검사와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서류전형·종합적성검사와”를 “서류전형

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체력시험을”을 “체력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서류전형·체력시험·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실기시험을”을 “실기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응시하는 사람은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을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퍼센트”를 “1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44조에 따라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
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
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

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을 “(응시연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1세”를 “18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를 “선발시험에서”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응시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4조의 제목 “(필기시험)”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를 “필기시험 및 공직적격성평가 과목은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공직적격성평가 시험과목 중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 별표 4의2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제46조제1항제1호 중 “각 과목”을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

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력시험과 신체검사”를 “체력시험”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적격성평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서류전형의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2차시험 성적을 말하며, 제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은 제외한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

제49조제4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43조제1항관련)

계 급 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소방령 이상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 소방위		18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18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경·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 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장·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 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의무소방원으로 임용 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구분 계열별	공직적격성평가	필기시험	
인문사회 계열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행정법 소방학개론 한국사 영어	행정학
자연계열			자연과학개론

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표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제44조 관련)

대상 시험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대체하 는 시험의 종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기본)

비고: 위 표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는 대상시험의 원서접수 연도에 실시되는 시험으로 한정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제44조제1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55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IBT 71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	--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 제44조, 제46조제1항제4호, 제46조제5항,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2. 제42조의 개정규정: 2027년 9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7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9조, 별표 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 직위 제한)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 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 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 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 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 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단 <u>서 신설</u> >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 직위 제한) ----- ----- ----- ----- ----- ----- ----- ----- ----- ----- . 다 만,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직무 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 (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 로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 실 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 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 위에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1.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하는 소방 공무원
<신 설>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하는 소방

<신 설>	공무원 3.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하는 소방 공무원
<신 설>	제17조의2(신체검사) ① 소방공무원을 채용(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생 략) ② 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
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
자를 해당 자격 관련부서에 보
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시험의 방법) ①소방공무
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2. (생략)

3. 신체검사

4. ~ 7.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소방공
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
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
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
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
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
지 않는다.

-----.
----- 자격증소지
자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를 해당 자격 등 -----.

제36조(시험의 방법) ①-----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7. (현행과 같음)

8. 공직적격성평가

공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
량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

-----.

-----.

1. ~ 3. (생략)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
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하
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를 준용한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6.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
를 병행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과 종
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
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
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응시하는 사람
은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
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
다.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 -----

----- 제36조제1항을 -----
-----.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
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

<신 설>

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신 설>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제2호의 방법으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④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응시하는 사람은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 다음 -----

--. -----

-----.

1. -----

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체력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③ (생략)

<신설>

----- 서류전형과 -----
-----.

----- 체력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

2. -----

----- 서류전형·체
력시험·면접시험-----

-----.

----- 실기
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
-----.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종합적성검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소방
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
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취득한 점수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
에 따른 점수를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가산한다.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
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
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
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응시하는 사람은 종합적성
검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면접시
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

-----.

1. 관련 분야 -----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시험 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 설>

-----.

1. -----

----- 1퍼
센트 -----.

<삭 제>

제4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44조에 따라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
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한다.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제43조(응시연령 등) ① (현행과

① (생략)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제44조(필기시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

같음)

② -----

18세 -----.

③-----
----- 선발시험에서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응시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4조(시험과목) -----

----- 필기시험 및
공직적격성평가 과목은 별표 4

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2. (생 략)

<신 설>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
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
로 결정

2. (생 략)

3. 신체검사: 제43조제3항에 따

-----.

-----.

1.·2. (현행과 같음)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공직적격성평가 시험과목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 별표 4의2
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

1. ----- 별표 6에서 정한 영
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
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
점의 -----

2. (현행과 같음)

<삭 제>

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신 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 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③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 시험에 반영한다.

④ (생 략)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

4. 공직적격성평가: 각 과목 만
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
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② -----

----- 체력시험

----- 제1항제2호-----
-----.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
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지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것으
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 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 다. (생략)

<신설>

2. (생략)

⑥·⑦ (생략)

제49조(응시수수료) ① ~ ③ (생

-----.

1. ----- 공개경쟁채용 시험: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2차시험 성적을 말하며, 제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은 제외한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49조(응시수수료) ① ~ ③ (현

략)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생 략)	행과 같음) ④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92